[별지 제62호서식] <개정 2009.7.24>

제 호

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

1. 지정번호

2. 단체명(법인명)

3. 대표자 성명

4. 주소

5.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

「저작권법」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